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03
----------	-----

2018. 4. 5.(목)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의영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 2018년 3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3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3월 22일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의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에 생산라인을 신·증설하는 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과 충북경제 4% 실현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내용을 준용함으로써 관련 조례의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내 투자기업 지원 확대 및 모호한 용어 정비(안 제28조, 안 제29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7-63호) 준용

○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31조)

○ 사후관리기간 시점 통일 및 기간 단축(안 제36조)

⇒ 투자기업이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통일

3.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전문위원 : 오문석)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에 생산 라인을 신·증설하는 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과 충북경제 4% 실현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내용을 준용함으로써 관련 조례의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중 “국내·외기업 투자지원” 을 “국내기업 투자지원” 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는 삭제한다.

- 2. 기존건물 취득시 : 건물매입비를 제외한 신규 건축비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 및 공장 건축, 시설설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삭제한다.

제29조(도내공장 신·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를 삭제하고, 제32조를 제31조로 하며 제32조제1항 중 “제28조 내지 제31조” 를 “제28조 내지 제30조” 로 하고, 제2항 중 “제27조부터 제31조” 를 “제27조부터 제30조” 로 하고 “제33조” 를 “제32조” 로 한다.

제33조를 제32조로, 제34조를 제33조로, 제35조를 제34조로, 제36조를 제35조로, 제37조를 제36조로 한다.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투자기업이 정산완료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 또는 매각하는 경우

제36조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38조를 제37조로, 제39조를 제38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장 <u>국내·외기업 투자지원</u></p> <p>제28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p> <p>① (생 략)</p> <p>② <u>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u> <u>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u> <u>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u> <u>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제1호</u> <u>및 제2호에 해당 될 경우 투</u> <u>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u> <u>제3호에 해당 될 경우 3년간</u> <u>임대료의 50퍼센트까지 최고</u> <u>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u></p> <p>1. (생 략)</p> <p>2. <u>기존건물 취득시 : 건물취</u> <u>득비</u></p> <p>3. <u>건물임대시 : 임대료</u></p> <p>③ <u>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u> <u>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u> <u>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u> <u>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u> <u>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u> <u>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u> <u>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u></p>	<p>제5장 <u>국내기업 투자지원</u></p> <p>제28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u> <u>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u> <u>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u> <u>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다음</u> <u>각호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u> <u>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u> <u>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u>기존건물 취득시 : 건물매</u> <u>입비를 제외한 신규 건축비</u></p> <p>3. (삭 제)</p> <p>③ <u>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u> <u>금은 토지매입 및 공장 건축,</u> <u>시설설치비 등에 소요되는 비</u> <u>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u> <u>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u> <u>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u> <u>지원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u>제29조(도내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도지사는 도내 소재 공장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의거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u></p> <p><u>1. 공장 신규증설의 경우 :</u> <u>토지매입(임대로),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u></p> <p><u>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u> <u>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u></p>	<p><u>제29조(도내공장 신·증설시 시설 투자비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u></p> <p><u>1. (삭 제)</u></p> <p><u>2. (삭 제)</u></p>
<p><u>제31조(타 시·도 이전기업 등 준용) 도지사는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나 도내공장 증설 기업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되, 최고지원금액이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u></p>	<p><u>제31조(삭제)</u></p>

현 행	개 정 안
<p><u>제32조(지원한도 및 절차) ①</u>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제조업은 업체당 50억원을, 서비스업은 업체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u>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와 제33조에</u> 따른 보조금 지원은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한다.</p>	<p><u>제31조(지원한도 및 절차) ①</u> <u>제28조 내지 제30조</u>----- ----- ----- ----- -----.</p> <p>② <u>제27조부터 제30조</u>----- <u>제32조</u> ----- ----- -----.</p>
<p><u>제33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u> <u>제34조(시·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등)</u></p>	<p><u>제32조(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u> <u>제33조(시·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등)</u></p>
<p><u>제35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u></p>	<p><u>제34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u></p>
<p><u>제36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u></p>	<p><u>제35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u></p>
<p><u>제3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u> (생략) 1. (생략) 2. <u>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u> <u>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u> <u>경우</u></p>	<p><u>제36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u>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투자기업이 정산완료를 통지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u> <u>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 또는 매각</u> <u>하는 경우</u></p>

현행	개정안
<p>3. ~ 6. (생략)</p> <p>7. <u>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u></p> <p>8. (생략)</p> <p><u>제38조</u>(투자유치 성공 보상)</p> <p><u>제39조</u>(시행규칙)</p>	<p>3. ~ 6. (현행과 같음)</p> <p>7. <u>(삭제)</u></p> <p><u>7.</u> (현행과 같음)</p> <p><u>제37조</u>(투자유치 성공 보상)</p> <p><u>제38조</u>(시행규칙)</p>

**별표 2**

**타 시도 기업이전 및 도내 신증설 기업 지원기준(제28조 및 29조 관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p><b>타사·도 기 업</b></p>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 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li> </ul> <p>○ 이전기업 대상 및 규모</p> <p>〈본사 및 공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고용인원 <b>50인</b> 이상 기업의 전부(본사 또는 공장) 또는 일부가(본사 또는 공장)이전하는 경우 상시 고용인원이 <b>50인</b> 이상</li> </ul> <p>〈기업부설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고용규모가 <b>50인</b> 이상, 이 전 후 고용규모 <b>30인</b> 이상</li> </ul> <p>〈문화산업 및 연구·개발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고용규모가 <b>30인</b> 이상, 이 전 후 고용규모 <b>30인</b> 이상</li> </ul> <p>〈집단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규모가 <b>50인</b> 미만인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2개 이상 집단화 하여 이전하는 경우</li> <li>- 우리도의 전략산업인 IT·BT·NT 등 첨단업종에 한하여 지원 다만,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의 경우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과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특정업종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음</li> </ul>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 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li> </ul> <p>○ 이전기업 대상 및 규모</p> <p>〈본사 및 공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고용인원 <b>30인</b> 이상 기업의 전부(본사 또는 공장) 또는 일부가(본사 또는 공장)이전하는 경우 상시 고용 인원이 <b>30인</b> 이상 <b>※ 단, 성장촉진지역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신설)</b></li> </ul> <p>〈기업부설연구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고용규모가 <b>10인</b> 이상, 이 전 후 고용 규모 <b>10인</b> 이상</li> </ul> <p>〈문화산업 및 연구·개발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고용규모가 <b>10인</b> 이상, 이 전 후 고용규모 <b>10인</b> 이상</li> </ul> <p>〈집단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규모가 <b>30인</b> 미만인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2개 이상 집단화 하여 이전하는 경우</li> <li>- 우리도의 전략산업인 IT·BT·NT 등 첨단업종에 한하여 지원 다만,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의 경우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과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특정업종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음</li> </ul>

구 분	현 행	개 정 안
<p><u>신·증설 기업</u></p>	<p>◆ <u>도내 소재 공장</u></p> <p>○ 지원대상 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li> </ul>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도내에서</u>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이고,</li> <li>- 상시고용인원이 <u>50인</u> 이상인 기업</li> </ul>	<p>◆ <u>도내 신·증설 투자기업</u></p> <p>○ 지원대상 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li> </ul>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국내에서</u>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이고,</li> <li>- 상시고용인원이 <u>10인</u> 이상인 기업</li> </ul>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2017-63호)

제9조(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①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수도권기업은 제 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 것
2. 지방으로 이전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별표2에서 정한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영위할 것
3. 기존사업장(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아니 본다.

1. 수도권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2. 수도권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3.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제10조(지방 신·증설 투자) ①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② 국내기업 중 기존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 (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증설 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 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 사업장이 있을 것
3.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일 것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증설 투자로 아니 본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할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50명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인 경우 100명 이상이어도 가능함
3.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도 가능하고,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가능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별표2에서 정한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④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신·증설 사업장으로 재배치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